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
■ 박 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76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정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4. 6. 18.
-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므로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관련된 사업자단체가 설립한 협의회가 없는 한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유사하게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에서는 시도에 협의회 설치가능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4조의3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분쟁조정을 이용하려는 당사자들의 편의를 돕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위원 임명·위촉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생략)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u><신 설></u>	<u>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③ <u>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u> (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하고, 조정원 협의회는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④ (생략) ⑤ <u>조정원 협의회</u>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한다. 협의회는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를 대표한다. ⑥ <u>조정원 협의회</u>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는 위원의 임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협의회가 정한다. ⑦ <u>조정원 협의회</u>의 위원은 다	⑤ <u>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u> (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 및 시·도에 설치하는 협의회 (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는----- ----- ----- ----- -----.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⑦ <u>조정원 협의회 및 시·도</u>----- ----- ----- ----- -----. ⑧ <u>조정원 협의회 및 시·도</u>----- ----- ----- -----. ⑨ -----

현행	개정안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u>임명하거나 위촉한다.</u> 1. ~ 4. (생략) <u>⑧</u> ~ <u>⑫</u> (생략) <u>⑬</u> 제12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u>⑭</u> 조정원 협의회 위원장은 제13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24조의3(협회의 회의) ① ~	----- ----- ----- -----<u>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시·도 협의회</u> <u>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u> <u>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u> 1. ~ 4. (현행과 같음) <u>⑩</u> ~ <u>⑭</u> (현행 제8항 ~ 제12항과 같음) <u>⑮</u> 제14항 ----- ----- ----- ----- -----. <u>⑯</u> ----- <u>제15항</u>----- ----- ----- -----. 제24조의3(협회의 회의) ① ~

현행	개정안
④ (생략) ⑤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u>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u>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의4(분쟁조정 신청 등) ①·② (생략)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u>공정거래위원회</u>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24조의5(조정 등) ① ~ ④ (생략) ⑤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공정거래위원회</u>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	④ (현행과 같음) ⑤ ----- ----- -----<u>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도지사</u> 가-----. 제24조의4(분쟁조정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공정거래위원회,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원</u> <u>협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u> <u>에, 시·도 협회의 경우 공정</u> <u>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이를</u>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의5(조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조정원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는</u>

현행	개정안
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⑥ (생략)	----- ----- ----- -----.
	⑥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하도급거래로 인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함)에 설치하도록 하며, 사업자단체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함.¹⁾

< 하도급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현황 >

연번	기관	연번	기관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6	한국전기공사협회
2	대한건설협회 / 대한전문건설협회(공동)	7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3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8	대한건축사협회
4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9	한국소방시설공사협회
5	중소기업중앙회	10	한국광고단체연합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은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법률개정²⁾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고려할 때(2018. 03. 27 개정, 2019. 01. 01. 시행), 하도급분야의 수급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2018년 법률 개정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에만 시·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던 바³⁾, 그간의 운영 실태 및 성과를 바탕으로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제도의 확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3. 27.>

②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3. 27.>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3) 당시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총 4개 법률에 대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민병두의원안)이 존재하였으나 소위원회 논의 결과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만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

＜ 분쟁조정협의회별 접수건수 비교＞

구 분	가맹		대리점	
	조정원	시·도	조정원	시·도
2020년	514건	217건	80건	40건
2021년	490건	200건	71건	23건
2022년	489건	202건	86건	13건
2023년	605건	212건	92건	13건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한편, 개정안은 시·도 협의회의 설치를 전제로 협의회를 조정원 협의회와 시·도 협의회로 구분하여 분쟁조정 신청 및 각하·종료 사실의 통지(보고) 대상을 정비하여 공정위와 시·도의 분쟁조정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있음(안 제24조의4제3항 및 제24조의5제5항). 새로 신설되는 시·도 협의회의 분쟁조정 신청사항 및 종료·각하 사실의 통지·보고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정위와 시·도가 분쟁조정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다만, 개정안은 아래 사항에 관한 체계·자구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첫째, 개정안은 통지의무의 대상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하고 있는 동시에 보고의무 대상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하고 있어 통지의무의 대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외할 필요가 있음. 유사 입법례인 「가맹사업법」⁴⁾과 「대리점법」⁵⁾도 공정거래위원회를 보고

4)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④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의 경우

의무의 대상으로만 정하고 있음.⁶⁾

○ 둘째, 개정안은 사업자단체가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협의회(이하 “사업자단체 협의회”)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사실, 분쟁조정 각하·종료 사실을 공정위에 보고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사업자단체 협의회의 분쟁조정 신청·각하·종료 사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로의 보고 의무를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협의회 운영 관리의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 관리체계 정비 >

구분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①	신청사실 통지 의무	조정원 협의회	-	공정위, 분쟁당사자	분쟁당사자
		사업자단체 협의회	-	공정위, 분쟁당사자	분쟁당사자
		시·도 협의회		공정위, 분쟁당사자	분쟁당사자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이를 알려야 한다.

5) 제19조(조정 신청 등) ④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조정신청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이를 알려야 한다.

6) 가맹사업법·대리점법 등 유사입법례와 법 문언을 통일하려는 차원에서 다음의 수정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u>공정거래위원회</u>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 ----- ----- -----<u>공정거래위원회</u>,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u>조정원 협의회</u>의 경우 <u>공정거래위원회</u>, 시·도 <u>협의회</u>의 경우 <u>공정거래위원회</u> 및 시·도에 이를-----.	③ ----- ----- -----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u>조정원 협의회</u> 및 <u>사업자단체</u>에 설치하는 <u>협의회</u>의 경우 <u>공정거래위원회</u>, 시·도 <u>협의회</u>의 경우 <u>공정거래위원회</u> 및 시·도에 이를 알려야 한다.

구분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②	신청사실 보고(알림) 의무	조정원 협의회	공정위	공정위	공정위
		사업자단체 협의회	공정위	-	공정위
		시·도 협의회		공정위, 시·도	공정위, 시·도
	각하·종료 사실 보고 의무 ⁷⁾	조정원 협의회	공정위	공정위	공정위
		사업자단체 협의회	공정위	-	공정위
		시·도 협의회		공정위, 시·도	공정위, 시·도

○ 셋째, 가맹사업법⁸⁾과 대리점법⁹⁾은 시·도 협의회¹⁰⁾의 위원을 시·도 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게 할 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 시·도협회의의 위원이 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정안 제24조제9항을 유사입법례와 동일한 체계¹⁰⁾를 가지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7) 분쟁조정 각하·종료 사실은 공정위에 대한 보고 외에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하도급법 제24조의 5제5항)

8) 제17조(협의회의의 구성) ③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시·도에 두는 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9) 제14조(협의회의의 구성) ③ 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시·도에 두는 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0) 당초 개정안과 동일하게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도 시·도 협의회 위원을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8월 8일 개정되어 2024년 2월 9일 시행된 현행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의 시·도 협의회 위원 추천권을 삭제하였음.

- 넷째, 개정안 제24조 제7항 및 제8항은 현행 제24조 제5항 및 제6항의 “조정원 협의회”를 각각 “조정원 협의회 및 시·도”로 개정하나 이는 각각 “조정원 협의회 및 시·도 협의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 6788-5109